

구분	장치별 인증번호	귀금속별 함량(troz)			고철 무게 (kg)	경비 (원)
		백금	팔라듐	로듐		
엔진개조 B (21개)	8LP-IJ-01	0.0014	0.0772	0.0081	2.8	20,000
	8LP-IJ-02					
	ALP-IJ-01					
	5LP-EX-01					
	5LP-EX-02					
	ALP-EX-01					
	ALP-EX-02					
	ALP-EX-03					
	6LP-ET-01					
	7LP-ET-01					
	8LP-ET-01					
	9LP-ET-01					
	9LP-ET-02					
	ALP-ET-01					
	7LP-NM-01					
	9LP-NM-01					
	ALP-NM-01					
	9LP-BP-01					
	9LP-BP-02					
	9LP-EV-01					
	ALP-EV-01					

● 환경부고시제2017-240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에 따라 제품·포장재별 장기재활용목표율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환 경 부 장 관

< 2022년도 제품·포장재별 장기재활용목표율 >

품 목			2022년도 재활용의무율
금 속 캔	철 캔		0.831
	알루미늄캔		0.816
유 리 병			0.793
종 이 팩			0.360
합성수지 포장재	폴리에틸렌 텔레프탈 레이트병	단일 재질	무색 0.830
			유색 0.830
	복합재질		0.830
	발포합성수지(폴리스티렌페이퍼 제외)		0.807
	단일재질 폴리스티렌페이퍼		0.563

	단일·복합재질 폴리비닐클로라이드	0.771
기타 합성수지	용기류·트레이 단일재질	0.845
	복합재질 및 필름·시트형 단일·복합재질	0.729
	윤활유용기	0.805
	윤활유	0.760
	타이어	0.802
	형광등	0.608
	수산물 양식용부자	0.324
전지류	수은전지	0.600
	산화은전지	0.560
	리튬전지	0.650
	니켈·카드뮴전지	0.452
	망간전지·알칼리망간전지	0.312
	니켈수소전지	0.153
	곤포사일리지용 필름	0.511
	김발장	0.848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7-241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제1항에 따라 2018년에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하여야 하는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환 경 부 장 관

< 2018년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

품 목		2018년도 재활용의무율	
금속캔	철캔	0.810	
	알루미늄캔	0.797	
	유리병	0.734	
	종이팩	0.321	
합성수지 포장재	폴리에틸렌 텔레프탈 레이트병	단일 무색	0.800
		재질 유색	0.800
	복합재질		0.830
	발포합성수지(폴리스티렌페이퍼 제외)		0.807
	단일재질 폴리스티렌페이퍼		0.442
	단일·복합재질 폴리비닐클로라이드		0.692
	기타 합성수지	용기류·트레이 단일재질	0.808
		복합재질 및 필름·시트형 단일·복합재질	0.666
	윤활유용기		0.783
	윤활유	0.739	
	타이어	0.786	
	형광등	0.402	

	수산물 양식용부자	0.287
전 지 류	수은전지	0.600
	산화은전지	0.722
	리튬전지	0.749
	니켈·카드뮴전지	0.419
	망간전지·알칼리망간전지	0.225
	니켈수소전지	0.219
	곤포사일리지용 필름	0.313
	김발장	0.799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7-244호

「화학물질관리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7-106호, 2017.6.2)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환 경 부 장 관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5호와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지닌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되거나 저장되는 표준화된 정보를 말한다.
16. "전자화문서"란 종이문서와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정보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문서를 말한다.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칙 제45조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를 "규칙 제46조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 또는 변경된 위해관리계획서"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규칙 별지 제59호서식의 신청서와 변경된 위해관리계획서 3부 및 별지 제19호서식의 위해관리계획서 비상대응분야 요약서를"을 "제1항 각 호의 서류를"로 하며 단서 조항의 "자료만을"을 "자료(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를 포함한다)만을"으로 한다.

제7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제1항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 또는 변경된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할 때에 제7조의3에 따라 해당 서류의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를 이동저장장치에 저장하여 제출하는 경우, 종이문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3(위해관리계획서의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의 제출 등) ① 사업자가 법 제41조와 규칙 제46조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할 때 별지 제3호서식부터 제19호서식까지의 서류는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 ② 위해관리계획서 중 전체배치도, 설비배치도, 공정흐름도, 공정배관계장도 등의 도면은 전자화문